

문서제출명령신청서

사 건 2025나386 손해배상(자)
원 고 최애숙 외 2명
피 고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(변경 전: 쌍용자동차 주식회사)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.

문서의 표시

피고가 컨티넨탈(Continental)사로부터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ECU에 대한 “ECU 사양서”

문서의 취지

피고는 2026. 4. 28.자 준비서면 6~9쪽에서 컨티넨탈(Continental)사가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의 “ECU 사양서”를 언급하면서, 동 “ECU 사양서”중 극히 일부분(을 제42호증)을 제시하였는데, 이는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서 ECU로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의 전압값이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는 과정만을 보여줌에 불과하고 급발진을 발생시키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은 이와 같이 변화된 디지털 값을 해석·판단한 후 그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.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42호증은 “ECU 사양서”의 극히 일부분만에 불과하므로 제출되어야 할 문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서 급발진을 발생시킨 ECU 소프트웨어 결함, ECU의 BCM에 대한 명령 메시지 송부와 상호소통, BOS 등과 관련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의 ECU에 대한 “ECU 사양서”입니다.

문서를 가진 사람

피고 :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(변경 전: 쌍용자동차 주식회사)
주소 :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-12(철괴동)

증명할 사실

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하여 급발진이 발생한다는 사실, ECU가 BCM과 상호소통하면서 BCM에게 제동등점등 요청 메시지(Brake_Light_On_Request)를 보낸다는 사실 및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하여 급발진이 발생하는 경우 제동등점등 요청 메시지를 BCM에 보내지 않아 제동등이 점등될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

문서제출의무의 원인

① 해당유형

- ☒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(인용문서)
- ☐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(인도, 열람문서)
- ☐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(이익문서)
- ☐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것임(법률관계문서)
- ☐ 그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(사유 :)

② 해당 유형의 소명

피고는 2026. 4. 28.자 준비서면 6~9쪽에서 컨티넨탈(Continental)사가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의 “ECU 사양서”를 언급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(인용 문서)에 해당합니다.

제1심의 증거조사와 관계

① 증거유형 (제1심에서의 증거신청·조사 여부)

- ☐ 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조사
- ☐ ㉡ 제1심에서 신청을 철회한 증거조사
- ☐ ㉢ 제1심에서 신청인 기각된 증거조사
- ☒ ㉣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조사

② 항소심 조사 필요성의 유형별 소명

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2026. 4. 28.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인용한 문서입니다

2026. 4. 29.

원고 소송대리인
변호사 하종선

열람용